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심사보고서

2019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13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19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“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- 사업내용
 -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 - 영등포구 독서문화진흥 사업(4개 도서관 운영 외)
-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 - 범위: 영등포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· 관리,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사업

- 출연금액: 3,623,855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- 영등포문화재단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영등포 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 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검토결과,
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 -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임.
 - 따라서,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의 안 번 호	17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
다. 사업내용

-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- 영등포구 독서문화진흥 사업(4개 도서관 운영 외)

라. 출연 필요성

- 영등포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

- 영등포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· 관리
 -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사업
- 출연금액 : 3,623,855천원

※ 2020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0. 회계연도 세입 · 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